

	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	규정번호	4-1-2
		제정일자	2018.01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정관 제4조의7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학생교육, 졸업생의 취업, 교원의 연구,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수탁 받는 시설의 조직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수탁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(평생학습관, 화정영어마을, 어린이집, 센터)을 말하며, 그 기관의 장은 ‘기관장’이라 칭한다.

제3조(업무의 위임)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령·지침 등에 따라 수탁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수시로 지도·감독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수탁기관에는 위탁처에서 정한 조직과 인원을 두며, 효율적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 장) ① 수탁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설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③ 수탁기관장의 임기는 수탁기간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.

제6조(종사자) ① 수탁기관 종사자는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분장 업무를 담당한다.
 ②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통해 기관장이 채용하며,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이 단장에게 보고한다. 종사자의 고용기간은 수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장 운 영

제7조(신규 및 재수탁) 산학협력단에서 신규로 수탁을 신청하거나 재수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안자와 담당 학부·과장의 책임하에 수탁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계획)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수탁기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 및 관리) ① 산학협력단장은 수탁기관의 운영현황을 안산대학교 새빛학원 법인학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의 세부운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 수탁기관의 예산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자문위원회와 보육수탁기관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11조(행정사항) ① 수탁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수사항 등) 수탁기관의 인사·복무·회계·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복무 및 근로규칙 등을 제정할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3조(재정) 수탁기관의 재정은 위탁기관의 보조금 및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하며,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수탁기관의 회계연도는 위탁기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기관의 장과 인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, 제15조의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